

가맹계약서



[_____ 점]

주식회사 대단한푸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The대단한 커피”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5. “최초 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입회비·계약금·할부금·오픈지원비·최초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속 가맹금”이라 함은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7.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8.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을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9.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매뉴얼”이라 함은 가맹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영교범으로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기준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11.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성과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점포 운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당사자의 준수사항)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관리 및 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9. 분쟁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 금지
- ②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승인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6조 (계약의 해석)

-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민법, 기타 상관습에 의한다.
- ② 이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운영 및 관리운용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운영규칙이나 매뉴얼을 둘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발효)

이 계약은 양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서로써 양당사자는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논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이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제 2 장 개점의 준비

제9조 (가맹점의 표시)

-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별첨[1]**과 같다. 단, 계약체결 당시 확정된 점포가 없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 개설된 최초의 점포를 상기의 점포의 소재지, 점포규모의 기준으로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원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나 영업비밀의 사용권
 3. 상품 또는 원·부재료(이하 “원·부재료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
 4. 노하우(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이 계약상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

-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는 **별첨[3]**과 같다.
- ③ 가맹점운영권은 제9조의 점포소재지에 부여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제9조의 점포의 내부와 인접외부에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발효일과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3조 (영업지역의 보호)

- 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별첨[1]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 쇼핑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복합다중시설내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은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 ④ 제①항,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종이 아닌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의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 (점포의 설비)

-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한다(기존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맹본부는 기본적인 설계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의 준수여부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감리비용 55만원(vat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설 7일 전까지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15조 (개시 승인)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 점포의 설비, 기기의 설치, 상품 또는 원·부재료의 입고, 대금의 지급여부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개업을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지 못하여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를 설치할 지역 및 장소를 선정하고, 당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계약조건이나 점포운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가맹본부는 점포의 설치 지역 및 장소에 대하여 시장특성, 교통량, 고객대상의 분포 및 특성, 주요 근린시설, 점포별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단, 상호협약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16조 (최초가맹금 등)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은 **별첨[2]의 금액**으로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예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2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최초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17조 (가맹금의 반환)

-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② 가맹점계약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②항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②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맹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속가맹금)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별첨[2]**와 같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익월 5일 까지 전월의 총매출액을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상기 금액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정보공개서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의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운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입하는 시기와 공급하는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이행보증금)

- ① 가맹점사업자는 광고·관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별첨[2]**의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금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보상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설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영업활동의 조건

제20조 (교육 및 훈련)

- ①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나 직원으로 근무

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교육훈련과정	실시시기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단위: 천원)
최초교육	개설 전까지	별첨[2]의 금액 참조
수시교육	수시	별첨[2]의 금액 참조

※숙식비, 여비 등의 비용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수시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7)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가맹본부는 실비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점포환경개선)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② 제①항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간판교체 비용
 -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추가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 ③ 제①항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40
- ④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다.
 -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제22조 (경영지도)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한다.
- ③ 제②항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③항의 경영지도계획서에는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독 및 통제)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포를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점포관리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30)일부터 그 기준에 의하여 점검한다. 점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제①항의 점검을 위하여 가맹본부 직원의 출입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응하여야 한다. 또한, CCTV를 점포 내 설치하고 가맹본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에 항상 매뉴얼 사본을 최신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매뉴얼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시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 매뉴얼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4조 (주방기기의 설치 및 유지)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주방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주방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사양의 주방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방기기의 수리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제④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수리비의 견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정기일 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제25조 (POS 등 설비 및 기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POS 등 설비 및 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사양의 POS 등 설비 및 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26조 (광고)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실시 전 행사별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한다. 가맹점모집 광고가 전부일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있는 광고의 경우 전국 및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 시에만 시행하기로 하며, 동의비율이 충족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가맹본부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를 기재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본 조 제1항 외에 가맹점 개별단위로 개점 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마케팅업체에서 총 40팀(블로그 20팀, 인스타 20팀)의 체험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10팀에 대한 모집비는 가맹본부가 부담, 30팀에 대한 모집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다.(30만원vat별도) 또한, 체험단 1팀당 음료2EA, 디저트2EA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27조 (판촉)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판촉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국 및 지역별 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실시 전 행사별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있는 판촉의 경우 전국 및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 시에만 시행하기로 한다. “을”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동의비율이 충족될 경우 “을”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가맹본부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비율이 70%미만이라도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가맹계약과 별도로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를 기재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할 경우

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정보취득시에 고지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취득한 신용정보의 보안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 (원 · 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 · 부재료 등의 내역은 **별첨[4]**와 같다. 다만, 불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 · 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 · 부재료 등의 공급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한정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원 · 부재료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 · 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 진열을 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주문방식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주문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상품을 약정한 배송 일에 공급한다. 단, 원료의 수급차질, 천재지변, 일시적인 교통혼잡 등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상품대금결제는 주문 후 납품 전까지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상품의 대금결제를 지체하여 상품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 단, 대금결제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세부운영규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제29조 (원 · 부재료 등의 직접 조달)

- ①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원 · 부재료 등 및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은 원 · 부재료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원 · 부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원 · 부재료 등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는 원 · 부재료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신선식품 등 유통기한이 단기인 제품은 유통기한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검사를 대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수량보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상품 등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제②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원·부재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원·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보관상의 주의의무위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제공 상의 별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⑤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원·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

제31조 (원·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이나 경영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공개 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실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이나 경영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제①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①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원·부재료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 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

- ① 가맹점사업자는 월 24일 이상 영업하여야 하고,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 또는 정보공개서상에 영업시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켜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나 영업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조리·제조방식, 취급방법 등을 준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야 한다. 단, 지역적 특성이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

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가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⑥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방식, 취급방법 등에서 가맹본부가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 방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변동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30)일부터 그 변동 내용에 따라 점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위생, 청결, 안전, 노무 등 점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3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위생, 청결, 안전, 노무 등 점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급박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그 원인되는 사항이 해소되기 전까지 그 영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복장 등)

- 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복장의 색상, 규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임직원 및 종업원이 근무하는 자로서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상표권 등의 영업표지보호 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제품의 용기, 포장, 내외 장식, 포스터, 안내판,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익스테리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제34조 (보고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월(1)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본부에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직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업장부, POS시스템의 내용 등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장부, POS시스템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험)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이

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36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 (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1)개월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7조 제②항에 따라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⑦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 (영업의 상속)

-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 ④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6조의 최초 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38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

- 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제①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가 제①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가 제①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③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④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⑥ 가맹본부는 계약의 갱신 시 재가맹금을 면제한다.

제39조 (계약의 해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31조 제①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31조 제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일금 오십만원(W5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제40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과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9조 제③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①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7조 제②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①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41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42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①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②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①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4일(제45조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는 7일) 이상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관련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제47조 (특약사항)

1. 본사에서 지정한 마케팅업체 포블로그에서 총 40팀(블로그 20팀, 인스타 20팀)의 체험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10팀에 대한 모집비는 본사에서 부담, 30팀에 대한 모집비용은 점주가 부담한다. (30만원 VAT별도)
체험단 1팀당 음료 2EA, 디저트 2EA는 점주님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2. 본사에서 매장 모니터링 하는 것에 동의한다.

별첨 [1] : 가맹점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별첨 [3]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4]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 ·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등

VAT별도

갱신, 양수 계약 체결일	20 년 월 일
신규 계약 체결일	20 년 월 일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년)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금액	가맹비 ₩ 6,000,000 (금 원 정)
	교육비 ₩ 4,000,000 (금 원 정)
	보증금 ₩ 1,000,000 (금 원 정)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예치일	20 년 월 일

계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갑	(주)대단한푸드 (인)	을	(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에이동 1010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주 소(거주지)	
		주 소(점포)	
		점포규모	m ²
사업자등록번호	292-81-02983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1666-7870	전 화 번 호	

<실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다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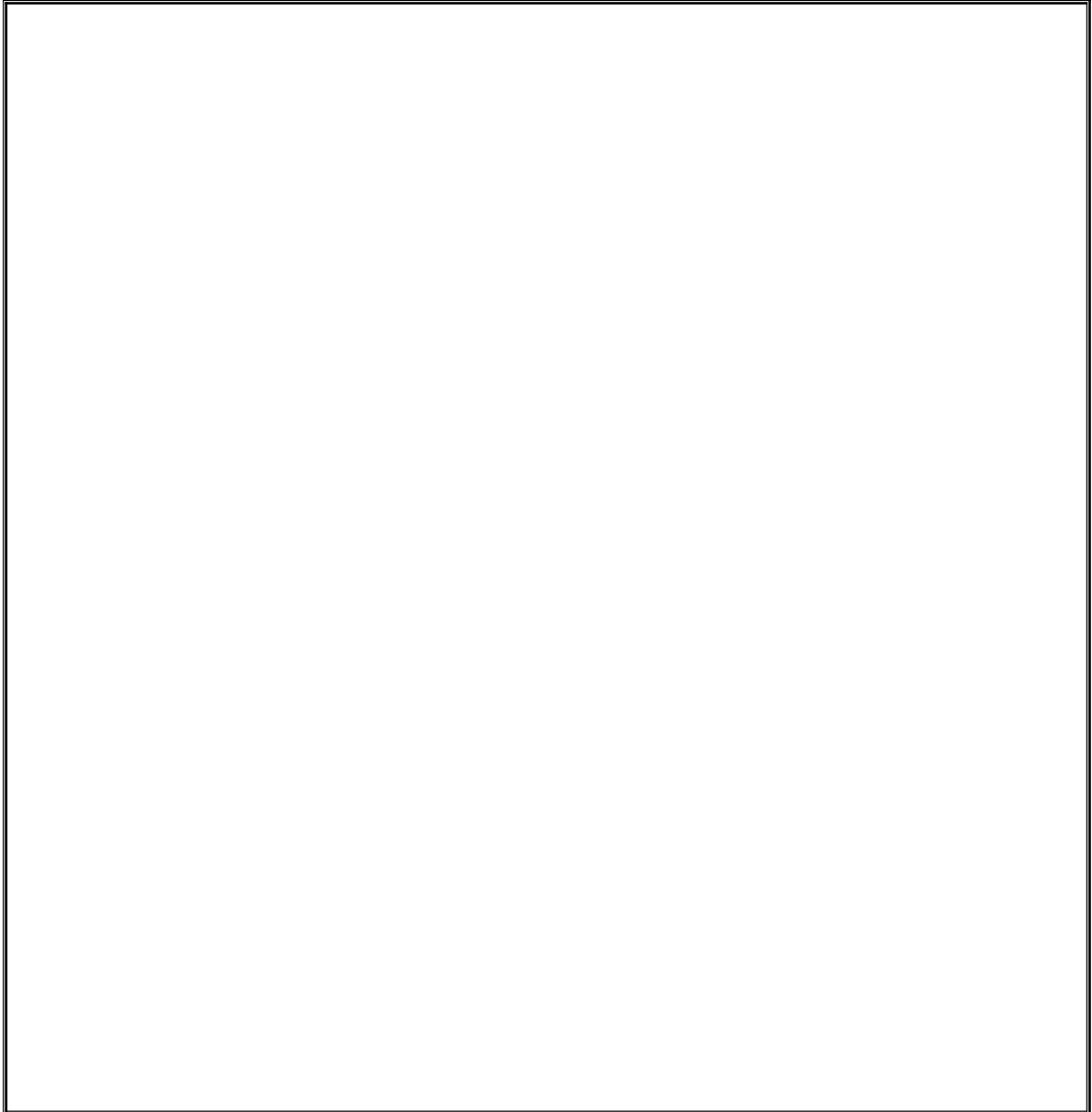
*대리인 필수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정보공개서 등 수령확인서 2부 수령 및 제공

을	(인)
주 소(거주지)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별첨 [1] : 가맹점의 표시

영업지역 :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계약매장에서 직선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300m**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아래에 지도나 내용을 별첨한 경우 아래의 별첨이 우선한다.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최초가맹금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구분(내용)	반환조건	지급시기	비고
가맹비	6,600	영업지역의 대가(30%)	계약체결 전 전	계약체결과 동시	
		기술 매뉴얼 제공의 대가(50%)	기술제공 전		
		개업지원(20%)	개업지원 전		
교육비	4,400	메뉴, 서비스, 운영등 오픈준비교육	교육참가 전		
총계	11,000				

(2) 계속가맹금

계속가맹금 내역	금액 (부가세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44만원	익월 05일		
계속교육비	수시교육:연 22만원(2회) (숙박비, 교통비 별도)	비용 통지서 도달 후 7일 이내	교육 미 실시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비	본 계약서 제26조(광고)에 따름			
판촉비	본 계약서 제27조(판촉)에 따름			

(3) 계약이행보증금

내역	금액(단위:천원)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	계약체결과 동시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을 제외하고 반환	최초 계약 2년 만료 전 해지시 반환되지 않음

별첨 [3]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출원번호	40-2023-0113978
출원 연월일	2023.06.28
존속기간 만료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30,35,43류
출원신청자	(주) 대단한푸드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됨

별첨 [4]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부동산	해당없음			
용역	인테리어	당사기준	강제	지정업체(미지정)
	POS 프로그램	당사기준	강제	지정업체 (메타포스)
	CCTV		강제	(주)아이토브
	간판	당사기준	강제	지정업체(미지정)
설비	※별첨[필수설비리스트] 참조			지정업체(주방뱅크 외)
상품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지정업체(CJ프레시웨이 이주)
원 · 부재료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커피머신	2구	권장	지정업체(주방뱅크)
제빙기	200kg		
1조세정제	900*600*850		
2조세정제	1500*700*850		
그라인더	4		
테이블냉장고	1		
테이블냉동고	1		
핫워터디스펜서	1		
빙삭기	1		
블랜더	1		
믹서볼	2		
정수필터	2		

매입상품	규격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원두	1kg	강제	지정업체(CJ프레시웨이(주))
컵홀더(로고)	1000ea		
컵캐리어(로고)	200ea		
과일퓨레	2.5kg		
타피오카펄	18kg		
홍차파우더	1kg		
타로파우더	1kg		
카푸치노파우더	1kg		
코코넛파우더	1kg		
허니듀파우더	1kg		
쿨블루파우더	1kg		
녹차파우더	1kg		
요거트파우더	1kg		
흑당시럽	2.5kg		
매실	1L		
유자	1L		
복분자	1L		
냅킨(로고)	1box		

- ※ 1.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기품목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급가격은 현 시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이 계약서에 공급 원·부재료 등의 내역이 없을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상기 제품 외에도 가맹본부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상품(공산품, 소비재 포함)과 가맹본부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